

회 의 록

일 시	2018.02.12.(월) 14:00	장 소	본관4층 402호	회 차	2017-6차
참석위원	신부식(위원장), 양기덕 위원, 김함겸 위원, 안규철 위원, 고운배 위원, 안중문 위원, 김동균(운영팀장), 김동현(서기)				
회의안건	1. 2017학년도 산학협력단 추가경정 예산 2. 2017학년도 산학협력단 사업 운영성과 자체 평가 3. 2018학년도 산학협력단 예산 4. 산학협력단 수탁시설 운영규칙 및 수탁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위원장이 2017학년도 제6차 운영위원회 개최에 대한 안건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회의내용					
운영위원회성원이 되었으므로, 신부식위원장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함.(14:00)					
1. 2017학년도 산학협력단 추가경정 예산 심의					
2017학년도 산학협력단의 본예산 1,533,199천원 및 추경예산6,193,374천원으로 최종예산은 세입·세출 각각7,726,573천원으로 확정됨을 설명하다.					
산학협력단의 수익률은 10.12%(예정)으로 전년대비 2% 가량 인상된 것을 보이나 결산시 일부 조정이 예상 됨. 국가 재정지원사업으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4,276백만원, 세계적수준의전문대학(wcc)육성사업 370백만원, 글로벌현장학습사업 419백만원의 성과를 얻었으며, 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매우 높았음.					
상기 추가경정에 대한 위원장의 세부예산서 설명 후 위원들에게 추경예산에 대해 심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다.					
Q) 2016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의 수익률이 인상된 것은 재정지원사업의 수혜가 영향이 있는 것인가?(안규철)					
A) 정확한 수익률은 결산이 이루어져야 확정지을 수 있겠으나, 수익률 산정시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수익률은 반영이 되지 않으며, 이번에 인상된 원인은 대학의 사업에 편성되었던 평생 학습관 및 지자체어린이집이 산학협력단으로 계약이 되어 수익률이 인상되었음.(위원장)					
Q)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를 줄일 수 있지 않은가?(고운배)					
A) 산학협력단의 사업이 중.하반기에 대부분 계약이 이루어져 진행되므로 하반기에 추경을 하게 되면 최종 추경 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임.(신부식위원장)					
신부식위원장이 위원들에서 2016학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의견을 묻고 동의 및 재청하여 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					
김함겸위원이 동의, 안규철위원이 재청하여 산학협력단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2. 2017학년도 산학협력단 사업 운영성과 자체평가 심의					
위원장이 2017학년도 산학협력단 사업 운영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표를 근간으로 위원들에게 설명하다. 국고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고 연구 및 교육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다. 각 사업별 운영성과에 대하여 위원장이 설명하고 그에 따른					

평가등급(A)이 나온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다. 사업평가 내용에 대한 회의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 및 개선에 대해 자문하여 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

Q) 신규사업이 전년대비하여 수주를 많이 했는가?(안규철)

A) 사업수주는 전년대비 비슷하나, 수주금액은 늘어난 상황이며, 고무적인 것인 산학협력중점 교원이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위원장)

Q) 이번 종합평가가 A등급 인데 사업들 운영 중 가장 우수한 사업을 꼽을 수 있는가?(김함겸)

A)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는 어르신즐김터 사업과 한국직무조리연수 사업이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진행된 것이 대표적일 수 있으며, 비록 어르신즐김터는 간접비 없이 대학에서 지원한 재원 및 인력이 많았지만 수강생인 어르신들의 호응 및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는 대학의 이미지 향상에 많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다.(위원장)

Q) 우리대학 사업수주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교육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술 및 연구사업에 대한 수주 현황은 어떠한가?(양기덕)

A) 물론 교육 사업이 대부분이나 안산시의 위탁연구사업 및 개인연구 사업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위원장)

Q) 교수들의 사업 참여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볼 때 어느정도 수준인지 파악이 되나?(김함겸)

A) 타 대학과의 비교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우리학교의 고유 목적 및 학과를 생각해 보면 간호보건 및 유아등 연구사업 보다는 교육사업에 치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공학 또한 설비 및 전기 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수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됨.(위원장)

Q) 우리대학에서 1인 1가족회사를 매칭 시켜서 활성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1학과 1사업 수주를 목표로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떠한지?(양기덕)

A) 제안에 대하여는 검토해 보겠으나, 학과 특성상 사업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학과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강제보다는 안내 차원으로 진행해 보겠음.(위원장)

○ 2017학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

- 사업활성화를 위한 학과 사업 수주 유도 홍보 안내 확대

* 위원장이 산학협력단 운영성과 자체 평가에 대한 추가질의를 묻고 평가에 대한 동의 및 재청하여 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 양기덕위원이 동의 하고 안종문 위원이 재청하여 자체평가에 대한 심의를 원안대로 가결하다.

3. 2018학년도 산학협력단 예산 심의

2018학년도 산학협력단의 본예산의 세입·세출 각각 1,547,233천원 확정됨을 설명하다.

산학협력단의 본예산 반영 시 국가재정지원사업 및 미 확정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서 8~9월 중 추가경정을 하여야 함을 설명.

2018학년도 본예산에 대한 위원장의 세부예산서 설명 후 위원들에게 심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다.

Q) 2018학년도는 전기 이월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안규철)

A) 전기 2017학년도는 사업이 대부분 종료되었으며, 이월사업이 없으므로 차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김동현 간사)

Q) 국가재정지원사업 및 지자체 사업은 반영이 안된것인가?(안중문)

A) 국가재정지원사업 등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반영하지 않음.(김동현)

Q)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반영하는 것이 예산서상 합당하다고 본다.(안중문)

A) 예산 미반영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기에 참고하여 반영하겠음.(김동현)

2018학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추가 질의 및 의견을 묻고 동의 및 재청하여 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

안규철위원이 동의하고 고운배위원이 재청하여 산학협력단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4. 산학협력단 수탁시설 운영규칙 및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심의

위원장이 산학협력단의 수탁시설 운영규칙 및 자문위원회 규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하다.

종전에 대학과 지자체와의 계약으로 운영되어 오던 보육수탁 및 평생학습관, 화정영어마을이 2017년 부로 산학협력단과 지자체와의 계약이 됨에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수탁시설 운영규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정 (안)을 참고로 위원들에게 설명.

위원들에게 수탁시설운영규칙 및 자문위원회 규정(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 및 검토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고운배위원 : ‘수탁시설’이란 명칭보다는 ‘수탁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재 사용되는 수탁시설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수탁시설 ‘운영규칙’이 아니라 대학과 동일하게 ‘운영규정’이란 문구로 정정해 주기 바란다.(고운배)

▶ 안규철위원 : 수탁시설 자문위원회 규정(안) 제6조(회의) 2항에 의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자문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 기관 이기에 의결의 문구는 삭제해 주기 바란다.

▶ 안중문위원 : 수탁시설운영규칙 제10조(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문위원회 규정에서 정의하는 것이 조문의 불필요한 내용 정리가 될거라 생각됨.

▶ 위원장 : 위원분들의 세심한 자문과 검토로 산학협력단 수탁시설 운영규정 및 규칙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2018년부터는 대학 법인이 아닌 산학협력단의 수탁시설 운영규정을 가지고 안산시화정영어마을 외 6개 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수탁시설운영규칙(규정) 및 자문위원회 규정은 수정 후 위원들에게 별도로 메일로 송부하여 확인 하겠으며, 이 운영규정은 2018.02.12.부터 시행하겠음.

○ 신부식위원장이 추가 의견유무를 묻고, 의견이 없으므로 주기도문으로 폐회하다(16:20).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확인 및 회의록 동의]

구 분	직 급	성 명	서 명
위원장	산학협력단장	신부식	신부식
자문위원	기획처장	김성중	위임장
자문위원	창업보육센터장	양기덕	양기덕
자문위원	교수	김항겸	김항겸
자문위원	교수	권정숙	위임장
자문위원	교수	안규철	안규철
자문위원	교수	고운배	고운배
자문위원	교수	안종문	안종문
간사	운영팀장	김동균	김동균
간사	서 기	김동현	김동현

위와 같이 회의록을 보고합니다.

2018. 02. 12.(월)

서기	단장
김동현	신부식

2017-6차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 회의일시: 2018.02.12.(월) 14:00~

□ 회의장소: 본관 2층 산학협력단장실

심의안건

1. 2017년 산학협력단 추가경정 예산
2. 2017산학협력단 신규사업 및 수탁기관 운영평가
3. 2018년 산학협력단 예산
4. 산학협력단 운영규칙 및 규정 제(개)정
 - 1) 산학협력단 수탁시설 운영규칙 제정
 - 2) 산학협력단 수탁시설 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 산학협력단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최종] 자문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근거]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2017학년도 추경예산]

- 당해연도 산학협력단 추경예산은(본예산 + 추가경정) 최종 세입 및 세출 예산 총액 7,726,573천원으로 편성함.

□ 2017년 국고(신규) 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책임자	사업금액(원)	비고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윤동열	4,276,000,000	
세계적수준의전문대학육성사업(WCC)	윤동열	370,000,000	
글로벌현장학습사업	정승조	419,800,000	

□ 산학협력수익률 비교 (교육부지원금 제외)

(금액단위:천원)

기준 년도	운영수익총계 [A]	등록금수입 [B]	산학협력수익률 C[=A/B]
2014	2,338,380	28,363,530	8.24%(결산)
2015	2,233,909	28,013,872	7.97%(결산)
2016	2,386,857	27,384,255	8.71%(결산)
2017	2,667,386	26,343,185	10.12%(예정)

-산 식 :

: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 등록금 수입(단기수강료제외)

* 산학협력단 운영수익(현금흐름표 기준) : 산학협력수익+전입및기부금수익+운영외수익+타부처및지자체보조금

[최종 추가경정예산 대상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원기관	사업명	예산		
			본예산 (A)	추경 (B)	최종예산 C(=A+B)
산 학 협 력 단	교육부 (수익을제외)	특성화전문대학육성	-	4,276,000	4,276,000
		세계적수준의 전문대학(WCC) 육성사업	-	370,000	370,000
		글로벌 해외현장학습	-	419,800	419,800
		2016 세계로(싱가폴) 실적비 입금	-	6,114	6,114
		2016년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_ LINC사업비		10,545	10,545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김규태)		20,565	20,565
	한국산업인력공단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김규태)		135,596	135,596
	한국기술사회	한국직무연수(조리)위탁(이병순)		20,524	20,524
	한국기술대학능력개발원	어르신즐거움사업		10,000	10,000
	경기복지재단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위탁개발(양기덕)	26,000	2,556	28,556
산 학 협 력 단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한성택)	30,000	-14,980	15,02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남한강 단위유역 하수도 정비계획(조문기)		19,800	19,800
	도화엔지니어링외	인문사회분야일반공동연구(조문기)		26,910	26,910
	한국연구재단				

구분	지원기관	사업명	예산		
			본예산 (A)	추경 (B)	최종예산 C(=A+B)
산 학 협 령 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오종철)		23,042	23,042
		유치원연합회_드림멘토스쿨		6,589	6,589
	안산시	안산시화정영어마을(손기표)	1,045,000	349,267	1,394,267
		안산시평생학습관(최라영)		214,413	214,413
		삼두밥상 음식조리 및 개발음식 홍보관 운영		16,418	16,418
	안산시교육청	경기꿈의대학 운영사업(강동우)		11,166	11,166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 상인교육사업(과천/이태현)		18,882	18,882
		소상공인 상인교육사업(선부동/이태현)		19,295	19,29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_평가전문인력양성		7,200	7,200
		국민건강보험공단_건강검진실무 고급과정		34,545	34,545
	시흥시	시흥시드림멘토스쿨사업(이정화)		671	671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권혁경)		2,182	2,182
	한국물렉스	한국물렉스직장어린이집(권정숙)		104,989	104,989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 도서관		15,000	15,000

구분	지원기관	사업명	예 산		
			본예산 (A)	추경 (B)	최종예산 C(=A+B)
산 학 협 령 단	이자수익	예금이자		656	656
	운영외수익	웰니스지원센터 회원 등록비		41,000	41,000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 등록비		742	742
		해외취업연수 학생 자부담		51,000	51,000
		한글아카데미 참여 수강생 수업료 등		1,900	1,900
	퇴직급여전입	퇴직급여총당금 11명 적립		26,000	26,000
	임대보증금수입	화정영어마을 외국인 보증금 지원금 입금	5,000	-5,000	0
	기초자금		34,100	-4,100	30,000
	산학협력단 합계(창보제외)		1,140,100	6,239,287	7,379,387

(단위 : 천원)

구분	지원기관 (계정명)	사업명	예 산		
			본예산 (A)	추경 (B)	최종예산 C(A+B)
창 업 보 육 센 터	국고보조금	중소기업청 운영비지원금	54,000	-14,000	40,000
	지자체보조금	창업보육센터 경기도 지원금	15,000	-6,000	9,000
		창업보육센터 안산시 지원금	42,000	-21,000	21,000
	일반기부금	입주업체발전기부금	24,000	-6,000	18,000
	설비자산사용료	일반관리비	145,320	-9,840	135,480
	이자수익	이자수익	1,200	233	1,433
	기타운영수익	관리비연체료外	500	50	550
	임대보증금	입주보증금	24,000	8,000	32,000
	퇴직급여전입	퇴직급여충당금		2,644	2,644
	기 초 자 금		87,079	0	87,079
	창업보육센터 합 계		393,099	-45,913	347,186
	산학협력단(산단+창보) 합 계		1,533,199	6,193,374	7,726,573

2017학년도 산학협력단 운영성과 자체평가표

영역	번호	사업명	사업비(천원)	집행	간접비	집행률	평가점수
국고	1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4,276,000	4,276,000	-	교육부평가로 산학협력단에서 평가 제외.	
	2	세계적수준의전문대학(WCC)	370,000	370,000	-		
	3	글로벌현장학습	419,800	419,800	-		
연구 / 교육	1	2017이공계연수사업	126,000	126,000	8,000	100%	B
	2	2016청년취업아카데미	89,600	89,600	-	100%	C
	3	한국직무조리연수	20,524	20,524	3,649	100%	A
	4	어르신즐김터	10,000	10,000	-	100%	A
	5	구매조건부기술개발위탁	27,000	30,000	3,000	100%	A
	6	산학연협력기술개발	26,000	26,000	4,800	100%	A
	7	소상공인 상인교육	38,177	38,177	1,659	100%	B
	8	국민건강보험공단실무자교육	34,545	34,545	-		B
기부금	1	기부금 유치	24,000 (예산)	24,000	-	%	A
종합평가							A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사업점수	A(5점)	B(4점)	C(3점)	D(2점)
평균점수	4.5 ↑	4.0 ↑	3.5 ↑	3.0 ↑

[사업평가 내용]

○ 연구/교육

1. 2017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 1) 책임교수 : 김규태
- 2) 운영기간 : 2017.03.01.~ 2017.12.31.
- 3) 사 업 비 : 126,000,000
- 4) 운영사항 : 취업률 36%(목표75%), 선발30명, 취업11
- 5) 평가내용 :

연수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연수수료생은 90%였으나 취업률이 저조하였음.

항 목	평가등급	점수
(1)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투명성	B	4
(2) 사업진행의 원활성 및 업무협조 사항	A	5
(3)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	D	2
(4) 대학발전 기여도	A	5
(5) 재정확보 공헌도(간접비 유무 확인)	A	5
평균등급	B	4.2

2 .2016 청년취업아카데미

- 1) 책임교수 : 김규태
- 2) 운영기간 : 2016.03.08.~ 2017.06.27.
- 3) 사 업 비 : 89,600,000
- 4) 운영사항 : 연수생 30명 / 수료자3명(취업자 2명)
- 5) 평가내용 :

데이터센터구축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모집은 30명으로 시작하였으나 하반기 중도 포기자가 90%를 넘었으며, 지원금 또한 자체부담이 30%가 되는 등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음.

항 목	평가등급	점수
(1)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투명성	A	5
(2) 사업진행의 원활성 및 업무협조 사항	A	5
(3)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	D	2
(4) 대학발전 기여도	B	4
(5) 재정확보 공헌도(간접비 유무 확인)	C	3
평균등급	C	3.8

3. 한국직무조리연수

- 1) 책임교수 : 이병순
- 2) 운영기간 : 2018.01.02.~ 2018.01.12.
- 3) 사 업 비 : 20,524,000
- 4) 운영사항 : 연수생 인원 22명 수료
- 5) 평가내용 :

특성화/마이스터고 교원대상 현장직무(조리)연수로 우수한 교육과 시설사용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이어 당해 연도 연속하여 사업이 진행 됨.

항 목	평가등급	점수
(1)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투명성	A	5
(2) 사업진행의 원활성 및 업무협조 사항	B	4
(3)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	A	5
(4) 대학발전 기여도	B	4
(5) 재정확보 공헌도(간접비 유무 확인)	A	5
평균등급	A	4.6

4. 어르신즐김터

- 1) 책임교수 : 변성원
- 2) 운영기간 : 2017.07.24.~ 2017.12.08
- 3) 사 업 비 : 10,000,000
- 4) 운영사항 : 노인대학원 28명 전원 수료
- 5) 평가내용 :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취미,여가, 교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 문화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침.

항 목	평가등급	점수
(1)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투명성	A	5
(2) 사업진행의 원활성 및 업무협조 사항	A	5
(3)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	A	5
(4) 대학발전 기여도	A	5
(5) 재정확보 공헌도(간접비 유무 확인)	C	3
평균등급	A	4.6

5. 구매조건부기술위탁

- 1) 책임교수 : 양기덕
- 2) 운영기간 : 2016.12.09.~2017.12.08.

3) 사 업 비 : 30,000,000

4) 운영사항 : KU/KA Band Changeable COTM시스템 개발 완료

5) 평가내용 :

산업체와 공동 연구개발로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해 기술개발 시스템 완료 제출.
타 사업에 비하여 간접비 비율이 높음.

항 목	평가등급	점수
(1)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투명성	A	5
(2) 사업진행의 원활성 및 업무협조 사항	A	5
(3)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	A	5
(4) 대학발전 기여도	B	4
(5) 재정확보 공헌도(간접비 유무 확인)	A	5
평균등급	A	4.8

6. 산학연협력기술개발

1) 책임교수 : 한성택

2) 운영기간 : 2016.12.01.~ 2017.09.30.

3) 사 업 비 : 26,000,000

4) 운영사항 : 태양광 발전용 IOT마이크로 인버터와 무선 지능형 제어기 개발 보고

5) 평가내용 :

산업체와 공동 연구개발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기술개발 시스템 완료 제출.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규정의 애로점 및 주관기관의 회계 및 정산을 산학협력단에서
함께 정산해야 하므로 사업정산의 제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항 목	평가등급	점수
(1)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투명성	B	4
(2) 사업진행의 원활성 및 업무협조 사항	A	5
(3)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	A	5
(4) 대학발전 기여도	B	4
(5) 재정확보 공헌도(간접비 유무 확인)	A	5
평균등급	A	4.6

7. 소상공인상인교육

1) 책임교수 : 이태헌

2) 운영기간 : 2017.04.13.~ 2017.12.31.

3) 사 업 비 : 38,187,000

4) 운영사항 : 안산시 선부동 및 과천지역 소상공인 92명 교육

5) 평가내용 :

지역사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운영한 소상공인 상인교육은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나, 교육장소가 시장 내에서 진행되어 협조사항의 애로점이 있었음.

항 목	평가등급	점수
(1)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투명성	B	4
(2) 사업진행의 원활성 및 업무협조 사항	B	4
(3)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	A	5
(4) 대학발전 기여도	A	5
(5) 재정확보 공헌도(간접비 유무 확인)	B	4
평균등급	B	4.4

8. 2017년 건강검진 실무 고급과정

- 1) 책임교수 : 김화선
- 2) 운영기간 : 2017.08.14.~ 2017.08.18.(4박 5일)
- 3) 사 업 비 : 34,545,000
- 4) 운영사항 : 검진기관 관리 담당 직원 80명
- 5) 평가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전문 담당자들의 위탁연수를 진행함으로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임.

항 목	평가등급	점수
(1)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투명성	A	5
(2) 사업진행의 원활성 및 업무협조 사항	B	4
(3)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	A	5
(4) 대학발전 기여도	A	5
(5) 재정확보 공헌도(간접비 유무 확인)	C	3
평균등급	B	4.4

○기부금 평가

- 기부금 예산대비 유치액 : 예산대비 200%를 초과함으로 목표 달성 함.

예산액	유치금액	달성비율	점수
24,000,000	24,000,000	100%	A

* 100%이상 : A 60~99% : B 40~59% : C 10~39% : D 0~9% : E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탁시설 운영규칙

2018년 1월 1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 제4조의7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학생교육, 졸업생의 취업, 교원의 연구,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수탁 받는 시설의 조직,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탁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평생학습관, 화정영어마을, 어린이집, 센터)을 말하며, 그 기관의 장은 ‘기관장’이라 칭한다.

제3조(업무의 위임) 산학협력단장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령·지침 등에 따라 수탁 시설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 수탁기관에는 위탁처에서 정한 조직과 인원을 두며, 효율적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 장) ① 수탁기관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시설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인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수탁기관장의 임기는 수탁기간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④ 안산대학의 전임교원이 아닌 자가 수탁기관의 장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신원보증보험 가입증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종사자) ① 수탁기관 종사자는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분장 업무를 담당한다.

②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통해 기관장이 채용하며,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이 단장에게 보고한다. 종사자의 고용기간은 수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운 영

제7조(신규 및 재수탁) 산학협력단에서 신규로 수탁을 신청하거나 재수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안자와 담당 학부·과장의 책임하에 수탁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계획) 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수탁기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운영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수탁기관의 운영현황을 안산대학교 새빛학원 법인학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세부운영사항은 기관장 책임 하에 결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기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시행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수탁기관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자문위원회와 보육수탁기관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1조(행정사항) ① 수탁기관에서 산학협력단 명의로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사무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등) 수탁기관의 인사·복무·회계·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칙과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 및 근로규칙 등을 제정할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3조(재정) 수탁기관의 재정은 위탁기관의 보조금 및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 수탁기관의 회계연도는 위탁기관에서 정한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용된 기관의 장과 인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되, 제15조의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탁기관 자문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탁기관 운영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

1. 수탁기관 예.결산에 관한 심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 발전을 위한 대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중요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수탁기관자문위원회와 보육수탁기관자문위원회를 둔다.

1. 각 위원회는 안산대학교 총장, 산학협력단장, 자문교수2인, 수탁기관장으로 구성한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수탁기관의 운영을 총괄한다.
3.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자문위원은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임기는 수탁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수탁기관의 운영) 수탁기관의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탁기관장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